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288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9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24. 10. 11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인도 청구와 미지급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판결)

판사 최현정

별지